

# 학보사운영규정

제정 2012.07.22      1차 개정 2014.08.08  
2차 개정 2018.06.01      3차 개정 2019.02.01  
4차 개정 2019.08.26      5차 개정 2022.10.04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보발간을 통하여 우송정보대학인의 지식과 교양의 증진을 도모하고, 학생들의 발표 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학내의 학술문화 활동과 동정을 학내외에 보도함으로써 건전한 학풍을 진작하고 대학의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본 기구의 명칭은 우송정보대학 학보사(이하 “학보사”라 한다)라 한다.

**제3조(임무)** 학보사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우송정보대학 학보 발간
2. 기타 학술문화 발전 및 언론 활동에 관한 사업

**제4조(임원)** ①학보사의 임원은 발행인과 주간으로 한다. <개정 2018.6.1.>

②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발행인은 총장이 되고, 학보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.
2. 주간은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발행인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18.6.1.>
3. 주간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학보의 편집, 제작 및 학보사 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을 지휘 감독한다. <개정 2018.6.1.>
4. 삭제 <2018.6.1.>
5. 삭제 <2018.6.1.>

**제5조(운영위원회)** ①학보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및 지도하기 위하여 학보사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두며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 한다.

1. 학보사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2. 학보 발간에 관한 주요사항
3. 규정 개정 및 기구 개편에 관한 사항
4. 기타 학보사 운영에 관하여 발행인이 부의하는 사항

②위원회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5인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교육혁신본부장으로 한다. <개정 2019.8.26., 2022.10.4.>

③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

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 <개정 2018.6.1.>

**제6조(학생임원)** ①학보사에는 학생 편집장과 학생기자를 둔다.

②학생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학생 편집장은 발행인의 승인을 받아 주간이 임명하며, 주간의 지도하에 학보의 발행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, 학생기자를 지휘 감독한다.
2. 학생기자는 지망학생 중 소정의 전형을 거쳐 10명 내외로 선발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주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.

<개정 2018.6.1.>

**제7조(편집회의)** 학보 편집 및 발간을 위해 편집회를 할 수 있다.

1. 편집회의는 주간의 주관하에 간사, 편집장, 학생기자가 참여한다.
2. 편집회의는 주간의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
**제8조(편집국)** ①편집국은 편집계획, 취재 및 조사업무를 담당한다.

②편집국에는 취재부, 기획부, 사회부, 문화학술부, 사진부로 구성하며,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취재부는 교내에서의 전반적인 사건의 취재를 담당한다.
2. 기획부는 신물발행 및 부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기획하며, 교내·외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한 취재를 담당한다.
3. 사회부는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대한 취재를 담당한다.
4. 문화학술부는 사회문화 및 대학문화등에 관련된 취재와 교내·외의 학술에 관련된 취재를 담당한다.
5. 사진부는 신문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진취재 업무를 담당한다.

**제9조(재정)** 학보사의 재정은 학생 자율 경비, 교비 및 기타 보조금으로 운영하며, 학보사 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학금 및 제경비를 지불할 수 있다.

**제10조(포상)** 학보 발간에 있어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고, 타의 모범이 되는 기자는 표창할 수 있다.

**제11조(징계)**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자는 퇴사를 명할 수 있다.

1.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
2. 편집 및 취재의 과실로 학보사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
3. 본 대학의 학적을 상실한 자
4. 기타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

**제12조(준용)**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하되,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.